

## 美 ITC, SiRF가 제기한 GPS 관련 특허침해소송 각하

미국의 통신반도체 개발업체인 브로드컴(Broadcom)은 지난 6월 15일, 동사가 2007년 7월에 인수한 글로벌 로케이트(Global Locate)를 상대로 GPS 칩 제조업체인 SiRF 테크놀로지 홀딩스 (SiRF Technology Holdings)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미국재무위원회(ITC)의 폴 루커른 행정법 판사가 각하시켰다고 전했다.

루커른 판사는 이에 더해, SiRF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2건 중 한 건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브로드컴은 글로벌 로케이트를 인수함으로써 GPS와 AGPS(GPS 지원측위) 반도체 솔루션 제공업체가 되었으며, 개인 네비게이션 장치 및 핸드폰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GPS 기능을 접목시키고 있다.

브로드컴의 데이비드 로스맨 부회장은 “우리가 SiRF의 GPS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루커른 판사의 판결에 매우 만족하며, 우리가 SiRF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Cellular News

## 美 Maxygen, Amgen사의 특허침해소송 제기 가능성 밝혀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에 소재한 생명공학기업 맥시젠(Maxygen Inc.)은 지난 6월 13일, 세계최대의 생명공학기업 암젠(Amgen Inc.)사가 저백혈구증 관련 질병의 치료에 사용될 동사의 의약품 후보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암젠은 지난 6월 3일, 미 특허상표청(US PTO)으로부터 G-CSF혼성분자(hybrid molecule)와 관련된 클레임으로 특허(제7,381,804B2호, 2015년 만료)를 승인받았다. 맥시젠은 동사가 개발한 Maxy-G34의 판매가 시작되면, 암젠사가 이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Maxy-G34와 관련된 다른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맥시젠은 이에 대해 “동 특허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승인되어서는 안되는 특허였다. 앞으로 모든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 美 Lannett, KV 제약의 프리마케어 원 특허무효확인소송 제기



[이미지 출처:primacareone]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둔 KV 제약

(KV Phar

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 란넬트(Lannett Co.)가 동사의 자회사인 Ther-RX의 태아 비타민제인 프리마케어 원(PrimaCare One)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KV의 회장 겸 CEO인 마크 S. 허블

린은 성명을 통해 “현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CNN



## 美 Whirlpool, LG전자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일부 자진취하

LG전자는 지난 6월 15일 성명을 통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월풀(Whirlpool Corp.)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일부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월풀사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관련 특허 5건) 중 2건의 특허에 대해 스스로 소송취하신청을 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나머지 3건은 여전히 ITC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

월풀사는 이밖에 7건의 특허침해 혐의를 주장하며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취하를 요청했다.

세계최대의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미국의 월풀사는 1월, LG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냉장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LG전자는 이에 대해 침해사실을 부인하며, 4월 미 연방지방법원에 월풀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LG전자가 냉장고와 세탁기를 고급화하면서 월풀의 홈그라운드인 북미시장에서 양사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출처 : Reuters

## 日 다케다 제약, 바 제약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일본 다케다 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은 지난 6월 9일, 지난해 11월 미 식품의약청(FDA)에 동사의 속쓰림 치료제 프레바시드 솔루탭(Prevacid SoluTab) 지연형 정제의 제네릭 버전 판매 허가를 신청한 미국 바 제약(Barr Pharmaceuticals Inc.)을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시장조사기관 IMS Health에 따르면, 프레바시드 솔루탭(란소프라졸)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미국에서만 4억 2천8백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한다. 다케다 제약은 소장을 통해 제네릭 버전 의약품이 만들어질 경우 2012년과 2019년에 만료될 예정인 특허들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케다 제약은 동사와 애보트(Abbott Laboratories)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탭 제약(TAP Pharmaceuticals Products Inc.)으로부터 애보트사가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론(Lupron)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당시 프레바시드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

다케다 제약뿐만 아니라 프레바시드

관련 특허들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티팜(Ethypharm SA)도 같은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모두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바 제약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3월에 이스라엘의 테바 제약(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을 상대로 제기되었던 프레바시드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프레바시드의 특허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출처 : Bloomberg

## 리비아 상표청, 제출 문서 인증과 관련해 새로운 절차 도입

**리**비아 상표청이 상표 출원에 필요한 몇가지 문서의 인증과 관련해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상업등기에 있어 위임장이나 신청 법인의 등기초본 등의 서류를 신청자의 자국에 있는 리비아 영사관에서 공인받은 뒤 다시 리비

아 외무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신청자의 자국에 있는 리비아 영사관에서 위임장이나 초본을 공인받을 것만이 요구되었었다.

출처 : AG-IP-News

## EU Vision ERA-NET, 혁신정책변화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출간

**F**P6의 지원을 받아 유럽 10개국 12개 기관이 참가하는 공동연구 네트워크 Vision ERA-NET이 최근 “작은 유럽국가들의 국가연구혁신정책의 관리를 위한 핵심 과제(Major challenges for the governance of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ies in small European countri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했다.

동 보고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며, 9개 유럽국가들의 혁신정책 개발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분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혁신”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한 동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혁신이라는 개념은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사회혁신, 조직혁신, 기관혁신, 서비스혁신 등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혁신의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각국이 혁신 정책을 크게 개선하고자 한다면, 구식의 사업 및 경영 모델부터 버릴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현재 취하고 있는 혁신 전략이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출처 : IPR Helpdesk

## EPO, 2008 EPO 항소심판원 주요 판례 발표

**유**럽특허청(EPO)이 최근 출간된 공보에 부록의 형식으로 2007 EPO 항소심판원 판례들을 발표했다.

일반 대중이 항소심판원의 판례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발표된 이

번 판례집은 간단한 사건 개요와 함께 주제별(진보성, 신규성, 공개의 충분성 등)로 가장 중요한 판례들을 담고 있다.

더불어, 항소심판원의 활동에 관한

통계 자료(예를 들어 2007년 한 해 동안 1,702건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 등)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IPR Helpdesk 2008. 6. 11



## EPO, EU-China 프로젝트(IPR2) 관련 사업 개시

**유** 럽특허청(EPO)이 최근,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에 도움이 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 프로젝트는 EPO뿐만 아니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SIPO), 중국 정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가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EU-중국 프로젝트(IPR2)의 일환으로 진행

된다고 한다.

IPR2는 지식재산권 집행의 강화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EPO는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 및 국가들과 공조할 것이며, 특히 SIPO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자

들이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방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및 관련 링크, 기타 자료들은 IPR2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 IPR Helpdesk

## EU, 국제계약에 적용될 준거법 결정할 Rome I Regulation 채택

**유** 럽연합의 사법 및 내무에 관한 회의가 지난 6월 5일부터 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라이선스나 기술이전협약 등 국제계약의 체결 시 중요한 계약상의 의무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한 로마 I 규정(Rome I Regulation)이 채택되었다.

로마 I 규정의 기본 원칙은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에 적용될 국가의

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적용되는데, 주로 계약당사자의 주소지나 인가자의 주소지, 법인의 소재지 등이 준거법이 된다고 추정되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로마 I 규정은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강제규정도 관할한다.

로마 I 규정은 공보(Official Jou

mal)에 발표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현재 국제계약 시 적용되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1980년의 로마 협약(Rome Convention)을 대신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유럽연합은 이 규정의 도입으로 EU 내에서 비 계약상의 의무(Rome II Regulation)와 계약상의 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을 통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출처 : IPR Helpdesk

